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1.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필요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가.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자원 활용을 통한 노인 장가요양보험에 대한 정보제공
다. 지역 경로당방문 등과 같은 노인 밀집 지역 방문 홍보
라. 홍보지, 지역광고지 광고 및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마. 지역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 연계 및 홍보
바. 재가 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 연계 홍보
사. 기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한 합법적 홍보 등

대상자의 자격

1.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월이용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따라 알 권리
2)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해 알 권리
4)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5)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6)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7)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8)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의무
1)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4)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이용자나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센터나 센터직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6)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센터급여를 제공함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2)계약급여종류 범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인정이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된 경우
3)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지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 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장애를 줄 때
6)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가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재가이용 급여비용의 범위

혜택구분	공단/개인부담비율		합계
	부담비율 구분	원 분담비율	
일반대상자	공단부담금	85%	100%
	개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	공단부담금	94%, 91%	100%
	개인부담금	6%, 9%	
기초생활수급자	공단부담금	100&	100%
	개인부담금	0%	

*혜택 구분 중 감경대상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에 명시됩니다.

2025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 한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원)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단, 평일 심야(오후 10시 이후 익일 오전 06시 이전) 및 일요일 30%가산,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1,2등급 270분 이상 8회/월 제공 가능하다.